

대전고등법원(청주) 2021. 1. 13 선고 2020나1791 판결 [사해행위취소]

재판경과

대전고등법원(청주) 2021. 1. 13 선고 2020나1791 판결

청주지방법원 2020. 5. 22 선고 2018가합3806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 1. A

2. B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신국희

피고, 항소인 주식회사 C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율촌 담당변호사 성소영, 이유영

변론 종결 2020. 12. 16.

판결 선고 2021. 1. 13.

제1심판결 청주지방법원 2020. 5. 22. 선고 2018가합3806 판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A에게 376,878,272원 및 그 중 309,000,000원에 대하여, 원고 B에게

360,856,122원 및 그 중 270,000,000원에 대하여 각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가. 피고와 소외 의료법인 D(이하 'D'이라 한다)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7. 5. 18. 체결된 신탁계약은 579,000,000원 및 그 중 309,000,000원에 대하여는 2016. 7. 6.부터 2016. 12. 30.까지는 연 4%의, 그 다음날부터 제1심 변론종결일까지는 연 6%의, 27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7. 5. 21.부터 2018. 7. 23.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제1심 변론종결일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의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

나. 피고는, 원고 A에게 309,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7. 6.부터 2016. 12. 30.까지는 연 4%의, 그 다음날부터 제1심 변론종결일까지는 연 6%의, 이 사건 판결 확정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원고 B에게 27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5. 21.부터 2018. 7. 23.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제1심 변론종결일까지는 연 15%의, 이 판결 확정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가. 제1심판결문 6쪽 본문 하1~2행의 "피고의 인영이 피고의 인장에 의한 것임은 인정하면서도, 피고의"를 "D의 인영이 D의 인장에 의한 것임은 인정하면서도, D의"로 고쳐 쓴다.

나. 제1심판결문 9쪽 1행부터 10쪽 12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2) 사해행위 여부

가) 관련 법리

채무초과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그 소유의 부동산을 채권자 중의 어느 한 사람에게 채권담보로 제공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만, 자금난으로 사업을 계속 추진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한 채무자가 자금을 융통하여 사업을 계속 추진하는 것이 채무 변제력을 갖게 되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신규자금을 융통하기 위하여 부득이 부동산을 특정 채권자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그로부터 신규자금을 추가로 융통받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의 담보권 설정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1. 5. 8. 선고 2000다50015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위 담보권 설정에 갈음하여 신규로 자금을 제공하는 채권자와 사이에 위 채권자 혹은 그가 지정하는 제3자를 수익자로 하는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신탁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할 것이고, 이러한 방식의 신탁행위의 사해성 여부는 신탁계약 당시의 채권채무관계를 비롯하여 신탁의 경위 및 목적과 경제적 의미, 신탁을 통하여 제공받은 자금의 사용처, 다른 일반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실효적 강제집행이나 그 밖의 채권 만족의 가능성에 새로운 장애가 생겨났는지 여부 등 관련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목적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다42874 판결, 대법원 2011. 5. 23.자 2009마1176 결정 등 참조).

그런데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빠진 채무자 및 그의 일반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사업 활동에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는 신규자금의 유입과 기존채무의 이행기의 연장 내지 채권회수의 유예는 사업의 갱생이나 계속적 추진을 위하여 가지는 경제적 의미가 동일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비록 사업의

갱생이나 계속 추진의 의도에서 이루어진 행위라 하더라도, 기존 채무의 이행을 유예받기 위하여 채권자 중 한 사람에게 그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거나 그 채권자를 수익자로 하는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신탁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행위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8다29215 판결,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다104564 판결 등 참조). 이에 비추어 보면, 채무초과 상태인 채무자가 새로운 채권자에게 그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거나 그를 수익자로 하는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자금을 빌려 그 자금의 전부 또는 대부분으로 기존 채무를 변제하는 경우에도, 그 실질은 신규자금의 유입 없이 단지 기존채무의 이행을 유예받기 위하여 특정채권자에게 담보를 제공하거나 담보 목적의 신탁계약을 체결하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으므로, 이러한 사정을 참작하여 그 신탁행위의 사해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3다83428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살피건대, 위 기초사실과 을 제6호증, 이 법원의 AC단체에 대한 금융거래정보회신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통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와 D이 이 사건 신탁계약을 체결할 당시 D의 소극재산은 9,042,854,541원인 반면, 적극재산은 7,130,042,500원에 불과하여(피고는 D의 적극재산이 더 존재한다고 주장하지만 관련 증거를 제출하지 않았다), 채무초과상태가 1,912,812,041원에 이르렀던 점, ② D이 이 사건 신탁계약의 체결 이전에도 다수의 채권자들로부터 독촉을 받으면서 대부업체 명의로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점, ③ 이 사건 신탁계약은 담보제공 목적으로 체결되었고, 피고에게 신탁된 이 사건 부동산은 D이 보유하고 있던 유일한 적극재산인 토지들 중 약 98%(= 이 사건 부동산 시가 7,019,060,500원/전체 부동산 시가 7,130,042,500원)에 이르는 점, ④ 기존에 설정되어 있던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무액은 3,360,000,000원에 불과하였고, 이 사건 신탁계약으로 인해 원고들 등 D의 다른 채권자들에게는 강제집행 등 채권 만족에 장애가 발생한 점, ⑤ D이 이 사건 신탁계약을 통해 융통한 신규자금(8억 4,000만 원)을 의료기나 집기 구입 등 사업추진을 계속하기 위한 용도에 사용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대부분 기존 채무의 변제에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피고는 D이 위 신규자금을 을 제7호증에 기재된 의료기, 비품 구입 등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였다가 근거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고, 이 법원에서 AC단체에 대한 금융거래정보회신결과를 토대로 2억 원 상당을 피고에 대한 대출 이자로, 나머지는 D의 임원 등에 대한 채무변제(대여금, 개인이 부담한 공사비 등), 노무비, 인건비, 업무경비 등에 사용하였다고 모두 재단 운영과 관련하여 지출하였다고 주장을 변경하였는데, 주장 자체로 보더라도 피고에 대한 이자지급이나 임원 등에 대한 채무변제를 신규사업 자금에 사용하였다고 볼 수 없고, 일부 사업자금으로 사용하였다는 부분도 현금 인출이나 계좌이체 내역만 있어 진위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다(피고가 제출하겠다고 밝힌 D의 전 이사장 AD의 사실확인서도 제출되지 않았다)]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신탁계약은 D의 공동담보의 부족을 초래하여 일반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D의 사해의사도 인정된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하여

가) 피고는 D이 부담한 고율의 기존 채무를 변제하고 추가 자금을 통해 변제력을 확보할 것으로 인식하여 이 사건 신탁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선의의 수익자라고 주장한다.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로서는 자신의 책임을 면하려면 자신의 선의를 입증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인데, 이 경우 수익자의 선의 여부는 채무자와 수익자의 관계,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처분행위의 내용과 그에 이르게 된 경위 또는 동기, 그 처분행위의 거래조건이 정상적이고 이를 의심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며 정상적인 거래관계임을 뒷받침할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지 여부, 그 처분행위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칙·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7다74621 판결 등 참조).

을 제9, 10, 1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D이 이 사건 신탁계약을 통해 이자 부담을 낮추고 일부 신규자금을 융통한 사실, 충청북도로부터 기존 채무의 상환 및 개원준비금으로만 사용하는 조건으로 기본재산처분허가를 받은 사실, 피고가 이 사건 신탁계약 전에 D의 사업계획을 검토하였던 사실은 인정되나, 앞서 본 D의 채무상황,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3,360,000,000원)이나 이 사건 신탁계약을 통한 신규 대출금 액수(4,200,000,000원)와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7,019,060,500원)의 차이가 상당한 점, 피고가 이 사건 신탁계약을 통해 D 책임재산의 거의

전부를 담보로 제공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인정사실과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선의의 수익자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피고는 원고 B가 D의 이사로서 2017. 4. 19. 이 사건 신탁계약에 관한 이사회에 참석하여 이에 동의하고도 이 사건에서 사해행위임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을 제1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B는 2017. 1. 24. D 이사에서 퇴임한 것으로 보이는바, 을 제2호증의 기재만으로는 B가 위 이사회에 실제 참석하여 이 사건 신탁계약에 동의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제1심판결문 11쪽 14행의 "이 사건 변론종결일"을 "제1심 변론종결일"로 고쳐 쓴다.

라. 제1심판결문 11쪽 하2~3행의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레법이 정한"을 "제1심 변론종결일인 2020. 5. 1.까지 청주지방법원 2018가합647호 판결(갑 제7호증)에서 인정된"으로 고쳐 쓴다.

마. 제1심판결문 12쪽 [계산식2] 아래 문단 2~3행의 "원고 A에게 376,878,272원, 원고 B에게 360,856,122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를 "원고 A에게 376,878,272원 및 그 중 309,000,000원에 대하여, 원고 B에게 360,856,122원 및 그 중 270,000,000원에 대하여 각"으로 고쳐 쓴다[2019.

12. 11.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의 청구취지 기재에 의하면, 원고들이 위 309,000,000원과 위 270,000,000원에 대하여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의 지연손해금을 구하였음이 명백하고, 제1심판결문의 청구취지도 이와 같이 기재되어 있다. 그럼에도 제1심은 피고에게 이를 초과하는 금액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각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 중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위에서 인정한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부분은 민사소송법 제203조(처분권주의)를 위반하였으므로 이를 취소하고,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원고들의 청구 중 극히 일부만이 기각됨을 고려하여 민사소송법 제98조, 제101조 단서에 따라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는 것으로 정한다).

판사이승훈

판사권노을

별지